



즉시 배포용: 2021 년 9 월 2 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022 년 1 월 15 일까지 유효한 코로나 관련 거주 및 상업 퇴거에 대한 새로운 모라토리엄에 서명

뉴욕 시민들에게 주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촉구 - ERAP 를 통해 12 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 의무화 또는 지출

새로운 법률, 이전에 퇴거를 선택했던 지역까지 임대 지원 프로그램과 퇴거 보호 확대

집주인과 주택 소유자를 위한 압류보호법 제정

뉴욕, 이제 코로나 19 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퇴거 보호 정책 강화

오늘 아침 일찍, Kathy Hochul 주지사는 2022 년 1 월 15 일까지 유효한 뉴욕주의 코로나 관련 주거 및 상업 퇴거에 대한 새로운 모라토리엄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에 따라, 팬데믹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임차인 세이프 하버법(Tenant Safe Harbor Act)의 모든 보호와 더불어 상업용 퇴거에 대한 새로운 보호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소득을 잃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사업주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뉴욕을 무너뜨리는 대법원의 무자비한 결정과 바이든 행정부의 퇴거 모라토리엄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주거 및 상업 퇴거에 대한 새로운 모라토리엄을 제정하고 뉴욕의 세이프 하버법의 보호를 1 월 15 일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신들의 잘못도 없이 고통받고 있는 취약한 뉴욕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주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ERAP)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신청이 보류 중인 동안 퇴거로부터 자동으로 보호되며,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경우 1 년 동안 퇴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신청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ERAP를 통해 12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의무화되거나 분배되었으며 여기에는 23,000명 이상의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한 3억 달러 규모 이상의 자금이 포함됩니다.

Brian Kavanagh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우리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들이 코로나 19로 (COVID-19)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집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후한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19가 주 전역에 걸쳐 뉴욕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협력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Carl Heastie 국회의장, 의회 법안 후원자인 Jeffrey Dinowitz 의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Jeffrey Dinowit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 정책만큼이나 보건 정책이며, 우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정부가 ERAP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팬데믹 여건에서 회복하기 위해 모두 협력함에 따라 이 법안은 수천 명의 가족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임차인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Carl Heastie 의장과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 Hochul 주지사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주신 Stewart-Cousins 다수당 원내대표 및 상원 법안 후원자인 Brian Kavanagh 에 감사를 표합니다."

새 법안은 주정부 프로그램을 선택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현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주 정부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제 지역 프로그램에 직접 신청하는 개인들도 주정부의 보다 광범위한 퇴거 보호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 법률은 또한 퇴거 소송절차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이용할 수 없는 주의 지역에서 주택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2,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추가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주인에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면적 중위소득(AMI)의 80%를 초과하고 AMI의 최대 120%를 초과한 가구에 1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세입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체납으로 거주지를 비운 집주인에게는 1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제정된 모라토리엄에 따라 세입자는 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충 신고서 또는 고충의 원인을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재정난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이제 법정에서 심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에게 안전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의도적으로 재산을 훼손하며, 세입자가 고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거용 주거지를 소유한 10 인 이하의 주택 소유자와 소규모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자나 압류 상대방, 압류를 막을 법원에 고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택 압류 절차를 유예합니다.

법안의 상업적 퇴거 및 상업적 압류 절차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재정난을 경험하고 있는 100 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세입자들은 퇴거를 막기 위해 고충 신고서나 고충의 근원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